

#1

1절. 법인세의 특징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의 특징을 학습하고 법인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2

- 코너1. 사례 & 퀴즈

※ 이럴 때 이런 게 궁금해요!

석훈: 선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관련해서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 그렇지, 영업관리부에서 세금 지식이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

석훈: 역시 그렇군요. 안 그래도 궁금한게 있었는데 여쭙봐도 되나요?

선배: 물론?

석훈: 저번에 제가 재산세 고지서 받았는데 너무 많이 과세된 것 같아서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하더라고요?

선배: 맞아,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라,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에 문의해야 해.

석훈: 와, 전혀 몰랐어요. 그럼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법인세는 국세인가요?

<세무박사 고박사의 해설>

네. 어렵지 않은 퀴즈여서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맞추신 것처럼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까요?

#3

- 코너2. 이것만 알아도 세금박사

※ 국세

아나운서: 오늘은 법인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계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해 여쭙봐야 할 것 같아요.

회계사: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국세에 대한 세금 종류는 매우 많으나 우리가 학습하게 될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합니다.

아나운서: 네. 설명을 듣고 조세체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하는데, 국세 중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회계사: 쉽게 설명하면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하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의미하죠.

아나운서: 아! 그렇군요.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 네. 그러죠. 먼저 직접세의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삼성전자의 법인세의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도 삼성전자입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아나운서: 예시를 들어 주시니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리겠네요?

회계사: 그렇죠. 맞습니다.

아나운서 : 그럼 아까 회계사님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접세는 직접세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계사: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세무서에 직접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보통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우리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나운서 : 편의점 주인이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사 : 그렇죠. 부가가치세처럼 담세자는 우리 소비자인데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편의점 주인인 것처럼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4

※ 간접세

이처럼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이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이처럼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생각나는 또 다른 간접세로는 술에 대해 과세하는 주세가 있겠네요. 왜 주세가 간접세인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정리가 된다면 간접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

※ 지방세

그럼 이제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지방세도 여러 세목이 있지만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여러분들도 들어 보셨을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시나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재산세가 많이 과세되었다고 항의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구청에 해야 합니다.

#6 - 코너1. 사례 & 퀴즈

※ 이럴 때 이런 게 궁금해요!

선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석훈: 아, 선배님. 저 정말 화나요.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선배: 이전에 재산세 때문에 한참 구청이랑 실랑이하지 않았어?

석훈: 그러니까요. 재산세 낸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또 내라고.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 봤더니 이번엔 뭐라는 줄 아세요? 세무서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선배: 아, 그래? 짜증 나겠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건가?

<세무박사 고박사의 해설>

이번 퀴즈는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석훈 씨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에 관한 보유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생각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7

- 코너2. 이것만 알아도 세금박사

※ 퀴즈를 통해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작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간접세일까요?

틀리신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연히 직접세입니다. 상속과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자도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도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면서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증여하고 합니다. 물론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제3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게 되면 받는 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만인 타인에게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걸 소득세 관련된 얘기니까 자세한 것은 소득세 학습할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지요.

#8

2절. 법인세! 전 직원이 궁금한 Q?

회계사 : 직장인이라면 법인세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 회계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법한 법인세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 트리를 잡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법인세 관련 주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키워드별로 업무 관련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문들도 제시해 드립니다.

#9

※ 법인세율

법인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말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가장 주된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

대다수가 근무하는 주식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의 산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봐야 합니다. 과세표준 많이 들어보셨죠?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 세액이란 과세표준 곱하기 법인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산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0

※ 사업연도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지만 법인의 사업연도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인들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12월 말 법인이 대다수이지만 9월 말 법인도 있고 3월 말 법인도 있는데 이처럼 사업연도를 법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학습을 통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1

※ 법인의 접대비

「법인세법」에서 민감한 계정으로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의 접대, 교제, 사례 등과 같은 목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접대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요. 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과연 전부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그 증빙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알면 업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법인세법」에는 비용이라는 용어대신 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앞으로 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회계학적인 용어, 손금은 「법인세법」상 용어, 이렇게 구분해 두면 됩니다.

#12

※ 퀴즈를 통해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작은 퀴즈를 풀어볼까요? 직감적으로도 충분히 맞출수 있는 문제입니다. 느낌이 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Q. 법인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전액 손금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등에 대해 앞으로 학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 법인지출 인건비

「법인세법」상 인건비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상여 등과 퇴직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텐데요. 법인의 인건비의 경우 지급하는 전부 비용 즉 손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건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는데 이러한 급여의 경우 무제한으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만일 회사의 오너인 지배주주가 급여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외에 상여금도 있을 텐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한도가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도 알아두면 아주 쓸모 있는 법인세 기본 지식입니다.

#14

※ 법인의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의 복지와 후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 우리사주 조합 운영비 등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다는 점에서는 임직원의 급여, 상여 등의 법인의 인건비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이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쉽게 떠오르는 항목 중 직장체육비,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직원의 노동 능력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인 만큼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어떤 내용을 알면 직장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지 기대를 갖고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란 회사가 취득한 유형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인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배분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지 않은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감가상각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 특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이 많은 장치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어떻게 손금처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이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엄청나게 해버려도 될까요? 아니면 올해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슬쩍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감가상각은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까요? 업무 중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을만한 내용을 골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6

※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주식 등과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 등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고 채권은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회사는 지배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타 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채권에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한 주식 등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만일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취득할 때 1주당 15만 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21만 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17만 원이 됐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현대자동차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아닌 회사채의 경우도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회사 보유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해 우리는 유가증권 편에서 학습할 것입니다.

#17

※ 법인의 기말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상품·제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인 반제품, 재공품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될 자산인 원재료, 저 장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법인세에 있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계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초 재고자산금액과 당기 중에 매입한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연말 결산 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기말재고자산을 얼마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매출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을 경우 연간 재고자산의 변동이 엄청날 텐데 이렇게 복잡한 법인의 재고자산의 평가를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

다.

#18

※ 법인의 금융비용과 금융수익

법인의 금융비용은 회사 운영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금융수익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에 의한 이자수익과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인 타 회사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인이 순수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에 대해 차입금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차입한 법인은 물론 「법인세법」에서도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금융조달 비용인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해 줄까요? 물론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당연해 보이지만 만일 회사가 차입금을 가지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투기를 위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과연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해 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이러한 지급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인의 지급이자에 비해 빈도나 중요도는 덜하지만 법인이 여유자금 등의 예치와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익인 이자수익에 대한 규정도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19

※ 예습해 볼까요?

Q. 법인의 여유자금의 예치나 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다른 법인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소득별로 분류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20

※ 매출채권 등의 대손

매출채권은 회사가 보유한 상품, 제품 등의 인도한 후 매출로 계상했지만 대금은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거나 받을 어음 등으로 받은 계정입니다. 이러한 매출채권의 회수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아마 외상으로 판매한 물품 대금인

매출채권 등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일 듯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 대금을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일 거래처가 파산은 하지 않았지만 파산 직전이어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대형 건설회사가 이라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1

※ 예습해 볼까요?

법인이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직관에 의한 퀴즈를 풀어보는 것으로 대략의 내용을 가늠해 볼까요?

Q. 연우전자는 올해 비정부기관인 사단법인 '국경 없는 의사회'에 20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기부금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에는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만일 회사가 과세소득 전액을 좋은 일을 한다고 기부했을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면 법인세는 한 푼도 걷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 등에 대해 학습하고 각자의 회사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 법인의 부동산 양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투기 등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물론 법인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주택 등을 사고파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만 과세할까요? 아니면 추가과세를 할까요? 현재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러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민감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23

※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이익이 날수만은 없는데요. 만일 작년도에 결손이 200억 원

발생했고 올해는 이익이 280억 원이 발생한 경우 올해 과세될 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작년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이익 280억 원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4

※ 법인세의 납부절차와 가산세

법인의 결산일이 12월 말인 경우 법인세는 언제 납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납부할 법인세액은 어떤 절차를 거쳐 계산하는지 등의 법인세 산출 세액계산 구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진 법인세 납부기한 내에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규정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

※ 법인이 부담하는 벌과금 등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벌과금은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의 과실에 의해 부담하는 벌과금에 대해 과연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해 줄까요? 벌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줄어들어 벌과금의 징벌적 효과가 희석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벌과금의 규정도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6

※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인 장학 재단이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장학사업에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만일 장학 재단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지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이니 무슨 사업을 해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까요? 이에 대해 간략히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는 것도 법인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법인세법」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예습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차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